한국의 민간대체복무 — *2021*





한국의 민간대체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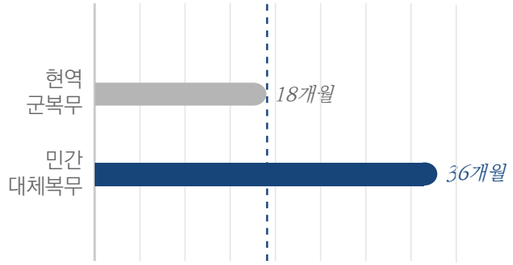
2018년,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 즉,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시행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현행 민간대체복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선택하기 어렵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대체복무의 기간 및 강도 — 또 다른 처벌

민간대체복무요원은 현역 군복무 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징역과 다름없는 가혹한 제약 아래 복무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는 이를 징벌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민간대체복무요원은 과거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처벌받은 재소자였던 때와 유사한 환경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36개월 동안 복무하며, 재소자였을 때보다 사실상 약 3배나 되는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민간대체복무의 기간 — 국제 표준

- "대체복무의 기간이 무장 군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 결정문 2008 (그리스).*
- "[대체역] 법률안은 대체복무를 병역보다 긴 3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당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6조에 위배되며 징벌적 조치로 간주된다."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 특별 조사관의 특별보고서, OL KOR 4/2019.*



헌법재판소

- "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가혹한 민간대체복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혹한 민간대체복무는 국제 표준에 배치됩니다. 바람직한 민간대체복무는 지역 사회에 유익을 주어야 하며,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처벌로 작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통금, 외출 제한, 제복 착용과 같은 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군과 전적으로 무관한 민간적 성격이어야 합니다.

민간대체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재소자나 군인처럼 대우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민간대체복무요원은 수감된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내에 지어진 병영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무 기간의 처음 2개월 동안은 시설을 떠날 수 없으며, 예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간대체복무요원은 자녀들과 떨어져 그들의 경제적, 감정적 필요를 돌볼 수 없습니다.

민간대체복무요원에게 외출이 허락될 경우, 반드시 오후 9시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이는 사회, 교육, 종교 활동에 대한 비합리적인 제한입니다.

3,005

민간대체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3005명 이상의 신청자 중에서 단 1626명만이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집 지연은 그들의 가정생활과 경력 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통신 기기는 업무 시간 및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요원들은 긴급한 상황에도 직접 연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약에는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국제 표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러시아에서 시행되던 대체복무제도의 기간과 강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본 위원회는 대체복무의 복무 환경이 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 여기에는 거주지와 동떨어진 곳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 … 당사자의 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대체복무의 기간과 성격이 징벌적 요소를 갖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CCPR/C/RUS/CO/6, 2009년 11월 24일)*

유럽인권재판소는 민간대체복무에 대한 국제 표준을 다음과 같이 지지했습니다.

- "본 재판부는 어떤 당사국이, 법률에 의해서든 관행에 의해서든, 진정으로 민간적인 성격이 아니며, **억지 효과가 있거나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조직하고 시행하도록 허용한다면,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강조 추가됨] (아단 등 대 아르메니아, 청구번호 제75604/11호 §67, 2017년 10월 12일)

학계의 의견

- "복무 기간과 한정된 복무 분야는 국제적인 표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의 민간대체복무는 '대체 처벌'의 형태로 여겨집니다. 현행 [대체역]법은 대체복무요원에 의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인섭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2020년 11월 20일

가족 부양의 어려움

4살, 8살, 11살의 세 자녀를 둔 아버지인 장경진 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받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동안 불확실함 속에서 재판을 받아야했습니다. 이제 민간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3년간 자녀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경진 씨는 말합니다. "물론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제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돌봄이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교정시설로 생활이 제한된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민간대체복무 프로그램

유엔과 그 밖의 국제 기구들이 정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는 군의 통제나 감독하에 있지 않은 민간적 성격이며, 그 기간이나 강도가 징벌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일부 나라에서는 성직자의 국가 복무 면제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간대체복무를 마련하였습니다.[1]

대만

여호와의 증인은 20년 이상 당국과 협력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대만 시민을 위한 가치 있는 민간대체복무를 수행해왔습니다.[2] 정부 관계자들은 수년간 여호와의 증인의 훌륭한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 의무 군사 훈련 기간이 4개월인데 반해, 대체복무 기간은 6개월입니다.
-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다양한 공공 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습니다.
- 아내의 임신과 같은 법에 정해진 일부 상황에서, 민간대체복무요원은 등록된 거주지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복무하도록 재신청할 수 있으며 집에 거주하도록 배정될 수 있습니다. [3]



"민간대체복무는 국가와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면으로 유익합니다. 현재 정부나 사회 복지 기관에서 시행 중인 16가지 유형의 민간대체복무에서 그 점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린 궈앤, 전 대만 역정서장

핀란드



"핀란드 대법원에서 민간대체복무를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항상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는다고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민간대체복무]를 환영하고 지지해주는 분위기입니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대법원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케빈 아스플룬드, 여호와의 증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지역 사회는 민간대체복무요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복무 기관에는 학교, 대학교, 박물관, 병원, 도서관, 지방 자치 단체, 법원, 세무서, 양로원, 극장 및 재단이 포함됩니다.
- 민간대체복무요원은 자유 및 기본권에 대한 제약 없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민간대체복무는 세 가지 면에서 유익합니다. 민간대체복무를 해야 하는 사람, 복무 장소, 그리고 사회에 유익을 줍니다. 징벌적이지 않게 만들자는 것이 전반적인 취지였습니다."

—미코 레이요넨, 핀란드 비군사복무센터장

[1] 아르메니아,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스위스, 대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대만에서는 2000년 1월 15일자로 대체역법이 제정되고 병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대만 내정부 대체역복무관리지침 제28항, 일반 대체역 요원 우선 배치 및 특별 사정으로 인한 조정 원칙 제1조 제2항, 대체역 소집자의 자주 하는 질문 참조.

General Incorporated Association
Asia-Pacific Association of Jehovah's Witnesses

Asia-Pacific Association of Jehovah's Witnesses:
APAJW.jp@jw.org